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946-1680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 민영 | 비규제지역 | 없음 | 6개월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미적용 |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임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일 | 임의공급 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3.03.31.(금) | 2024.10.25.(금) | 2024.10.29.(화) | 2024.11.01.(금) | 2024.11.01.(금)~2024.11.02.(토) | 2024.11.02.(토) ~ 2024.11.03.(일) |

※ 공통 유의사항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분양사무소내 분양 상담전화(☎062-946-1680)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미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25입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4940107입니다.(청약자 나이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31.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04 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아파트는 골조공사 완료에 따른 발코니 확장 선택은 의무선택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임의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당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임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 임의공급 | ○ | ○ | X | X | X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규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구 분 | 임의공급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
| 일 정 | 2024.10.29.(화) | 2024.11.01.(금) | 2024.11.02.(토)~2024.11.0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잔여세대수의 90% 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 사무소 방문 (10:00 ~ 17:00) |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임의공급]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분양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22] |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택과 - 8984호(2023.03.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43-36 일원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층 8개동 총 542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176세대 ,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무순위 계약 이후 잔여물량 5세대
-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잔여세대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민영 주택 | 2024940107 | 01 | 063.9992A | 63A | 63.9992 | 19.1778 | 83.1770 | 44.3271 | 127.5041 | 39.1952 | 5 |
| | | | | | 합 계 | | | | | 5 | |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balconi 확장금액 별도)

(단위: 세대, 원)

| 약식 표기 | 동 | 호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 | 계약금 (5%) | 잔금 (95%)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총분양가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 63A | 107동 | 305 | 3층 | 1 | 145,854,300 | 363,145,700 | 509,000,000 | 25,450,000 | 483,550,000 |
| | | 404 | 4층 | 1 | 145,854,300 | 368,145,700 | 514,000,000 | 25,700,000 | 488,300,000 |
| | | 405 | 4층 | 1 | 145,854,300 | 368,145,700 | 514,000,000 | 25,700,000 | 488,300,000 |
| | | 503 | 5층 | 1 | 145,854,300 | 379,145,700 | 525,000,000 | 26,250,000 | 498,750,000 |
| | | 705 | 7층 | 1 | 145,854,300 | 379,145,700 | 525,000,000 | 26,250,000 | 498,750,000 |

▣ 공통 유의사항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balconi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소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의 동·호매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옥외계단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분양대금의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전수금을 부과합니다.
-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우리은행 | 1005-204-403435 |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상기 입금계좌는 balconi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약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VAT포함)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
| 63A | 14,900,000 | 1,490,000 | 13,410,000 |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약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우리은행 | 1005-004-536351 | 디엘건설 주식회사 |

- ※ 상기 입금계약은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약과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입금계약은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발코니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시행자 겸 분양공급자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설치로 인한 에어컨 설치공간(천장 깊이) 확보 불가로 아래층 세대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용선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자 겸 분양공급자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해당제한등을 적용받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II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11.02.(토)~2024.11.03.(일) | e편한세상 분양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22] |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 |

| | | | | |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 분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 전자수입인지 | 본인 | • 인지세법에 의거한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사본 제출)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위임장 | 계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 분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임의공급 모집공고일(2024.10.2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계약자구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만원 / 10억원 초과 : 17.5만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4.01.0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해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광주제석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2학교군이며,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참조

【초등학교】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gen.go.kr/>) / 행정정보마당 / 공지사항

【중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유의사항

- 현재 아파트는 준공허가를 득한 상태임으로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03.31.)를 당사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lcon-apt.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4.11.01.(금) ~ 2024.11.10.(일)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4.11.0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기타 주요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장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주 :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4년 1월 31일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86번지 일대 층수 : 지하 2층, 지상 19층 연면적 : 86,724.996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중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인증번호 : KRI-19-160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19. 12. 18.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19년 12월 18일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건축물 개요 | 인증개요 |
|--|--|
| 건축물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장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연도 : 2024년 01월 31일 주소 : 광주 남구 주월동 1186번지 일대 층수 : 지하2층 / 지상19층 연면적 : 86724.996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인증번호 : 19-주-에-1-1076 평가자 : 김정호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 요구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등급 |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년) | 배출량 |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 87.7 | 에너지효율 높음 | 1 | CO ₂ 배출 저음 | 33.4 |
|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 | 에너지효율 낮음 | | CO ₂ 배출 많음 |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41.8 | 74.0 | 57.3 | 15.4 |
| 급탕 | 30.7 | 35.2 | 26.2 | 7.2 |
| 조명 | 15.2 | 14.6 | 40.0 | 6.8 |
| 환기 | | 8.5 | 23.4 | 4.0 |
| 합계 | 87.7 | 132.3 | 146.9 | 33.4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M 이상 (주동하부 통로구간 제외) | 2.3M 이상 | 2.7M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 상 호 |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디엘건설 주식회사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200171-0018480 | 110111-0163115 | 110111-7736808 |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23번길 8, 2층 (봉선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 서울 종로구 동일로 134 D타워 |

▣ 시공회사
• 시공사인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공자로서 참여합니다.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는 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관련 민원업무만 담당하며, 분양관련 민원업무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위탁자)가 담당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dlcon-apt.co.kr

▣ 분양사무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22

▣ 분양문의 : ☎ 062-946-168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dlcon-apt.co.kr/>

사업주체 : 장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대표번호

062-946-1680